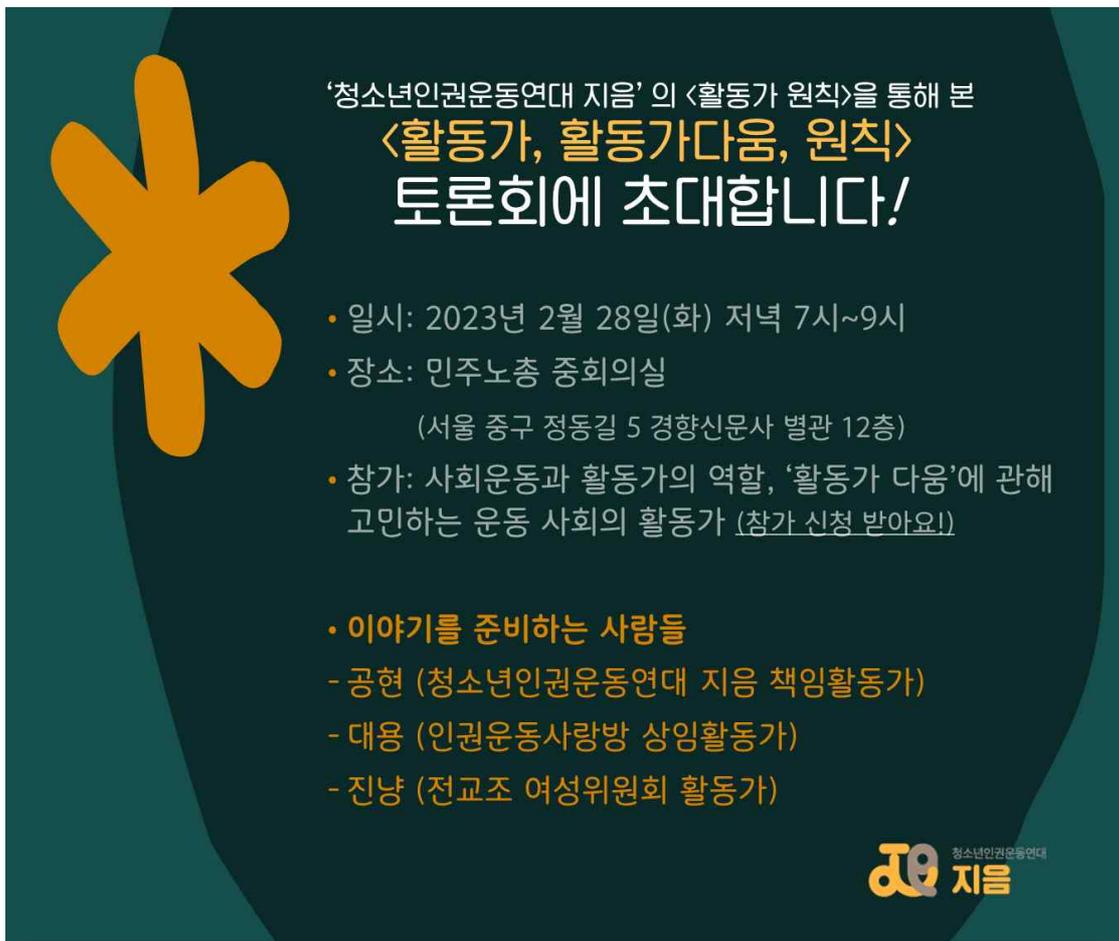


<활동가, 활동가다움, 원칙>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원칙>을 통해 본
<활동가, 활동가다움, 원칙>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저녁 7시~9시
- 장소: 민주노총 중회의실
(서울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12층)
- 참가: 사회운동과 활동가의 역할, '활동가 다움'에 관해 고민하는 운동 사회의 활동가 (참가 신청 받아요!)

• 이야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진냥 (전교조 여성위원회 활동가)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저녁 7시
장소: 민주노총 중회의실 (서울 중구 정동길)

- 진행 순서 -

시간	내용
19:00~19:05 (5분)	여는 시간 - 서로 소개 및 인사
19:05~19:20 (15분)	[발표 1] 공현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19:20~19:35 (15분)	[발표 2] 대용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9:35~19:50 (15분)	[발표 3] 진냥 - '전교조 여성위원회' 활동가
19:50~20:00 (10분)	쉬는 시간
20:00~20:50 (50분)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20:50~21:00 (10분)	닫는 시간 - 소감 나눔 및 함께 마무리

- 목 차 -

인권운동이란, 활동가란 어떤 것일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원칙에 담은 고민들 3
<운동원칙선언>, 반복되는 합의의 역사 11
강호의 도가 떨어진 시대, 활동가란 무엇인가 15

인권운동이란, 활동가란 어떤 것일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원칙에 담은 고민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원칙, 왜 필요한가

-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주로 청소년인 활동가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활동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나는 활동가인가?”였다. 이런 의문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소수자가 조직 안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얻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활동가라는 직업/역할/존재가 사람들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 오개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당사자 / 비청소년-전문가·활동가]라는 사회 통념을 반영한 구도 속에서 더욱 문제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활동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여 스스로의 신념과 욕망에 따라서 인권운동을 한다. 그리고 인권운동은 본래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의 영역이다. 하지만 활동가가 하는 역할은 지극히 공적이다. 공공의 관심을 받는 공적인 의제를 다루고, 공적인 윤리 규범을 요구받는다. 그러한 간극을 좁히고 연결하기 위한 더 많은 담론,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참여할 수 있게 적절한 문화와 관계의 기반이 필요하다.
- ‘들어가며’에서 언급한 활동가 원칙 마련의 배경 : 활동가들의 생활과 활동, 조직은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많은 운동이 활동가들의 불안정한 삶의 조건, 명망가에 의한 운동의 사유화나 운동의 독립성 훼손 문제 등에도 마주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경우 ‘청소년’의 특성이나 청소년운동에 대한 인식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진다. 따라서 지음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활동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침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활동 방식과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한 방도로서 ‘활동가 원칙’을 마련했다.

운동과 활동가 사이의 관계

- 활동가가 운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양쪽의 편향이 있어 왔다. 한 쪽에서는 대의나 운동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활동가에게 헌신을 요구해 왔고, 다른 한 쪽에서는 활동가가 운동의 수단이 아님을 강변하며 개인의 권익과 행복을 우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자유주의의 득세 속에 최근에는 후자의 주장이 일종의 ‘상식’이자 당위로 자리 잡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적절치 않은 관점이라고 보았다.

- 운동의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한다. 활동가들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중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 윤리다. 하지만 그것이 운동의 목표가 활동가를 존중하는 것 자체나 활동가의 행복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운동은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복무하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이다. 더 나아가, 이상적인 활동가와 운동의 관계는 자발성에 기초하여 운동 목표를 공유하고 활동함으로써, 운동의 목표 달성이 곧 활동가를 위한 것이며, 활동가가 행복한 것이 곧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우리는 활동가가 건강과 생계의 문제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주목했다. 우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건에 맞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조직에서 원활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또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활동을 그만두거나 쉬지 못하는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존과 건강을 위해 활동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도 명시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에, 동료 활동가가 선의를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능력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 “나는 활동가인가?”라고 묻는 이유, 그리고 운동에서 인정·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활동가들 사이의 역량의 차이, 조직 내에서의 역할의 차이 등 때문에 격차를 체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조직 안에서는 더 경력이 많고,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를 다소 거칠게 ‘(조직 내) 능력주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
- 지음은 이 문제에 대처하고 능력주의를 억제하려는 문제의식을 ‘함께 활동하는 원칙’에 중요하게 담아 보려 했다. 우선, 역량의 차이를 낳는 원인 중 하나인 활동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경험, 전문성, 역량의 차이가 고착화되고 위계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되진 않겠지만,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노력할 필요를 밝혀야 조금이라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아가서는, 이러한 활동에 관한 능력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조직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고 협력을 통해 형성해 나갈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문화에 관련해서 ‘모두가 고루 역량을 갖추는 방법을 고민하며 역량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문구도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의 활동가 처우 등

- 활동가가 곧 임금 노동자는 아니다. 상근자는 임금 노동자이긴 하지만, 단체에 따라

임금 노동자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지음의 경우 상임활동가가 운영진이기도 하여 임원이기도 하고 노동에 관해 높은 자율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조직과 상임활동가 사이에 임노동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최저선의 노동조건을 준수하되, 상세한 노동조건과 복지 수준은 현실적으로 조직의 상황을 고려해,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조직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노동자인 활동가)를 포함하여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상황을 핑계 삼아 노동조건이나 복지를 부당하게 후퇴시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활동가의 노동조건이나 복지는 하나의 단체 내부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조직은 상호부조 기구, 협동조합 등에 활동가를 연결시키고,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폭력·반차별

- 반폭력·반차별 관련 내용은 여러 조직이 내규나 원칙, 약속 등을 만드는 데 가장 널리 포함시키는 주제일 것이다. 지음의 원칙에서는 폭력과 차별의 배경으로 사회적 정체성과 위치, 소수자성을 명시하였고, 지음의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나이주의를 제일 먼저 명시했다.
- 차별 사유로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을 예시했고, 구체적인 폭력이나 언행에 관해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보다 포괄적이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차별·혐오 표현이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배제 등에 관해서는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 당사자 외에도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이 요구됨을 적었다. 또한 활동 와중에 다른 단체의 활동가에 의한 가해를 겪기도 하기에 이런 경우도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명시했다.(차별이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위 다른 조항에 포함된다고 봄)

조직 내 소통

- 조직 내에서의 소통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갈등 해결·관리를 위해 주의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지음의 활동가 원칙에서는 평등한 참여와 정보 공유, 질문과 응답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았는데, 앞으로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에 관해 조금 더 고민과 경험이 담겨 구체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 ‘조직 문화 및 갈등 해소’ 부분에서는 상호 책임과 소통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발언 기회가 골고루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질문과 도움 요청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질문과 요청에 적극 응답해

야 한다는 것이 함께 들어갔다. 또한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응대하는 것과 소수자성을 이유로 피해자성을 주장하는 일 등이 소통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경우라고 보았다.

공직·정당 활동 제한

- 언급한 문제 중 운동 성과의 사유화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공직·정당 활동 제한을 포함시켰다. 통상 회칙에 들어갈 법한 내용을 활동가 원칙에 담은 것은, 이 내용이 활동가의 규범이자,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닌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도권 권력이나 명예 등에 가까워지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운동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활동가 개인이 정치인·공직자가 되는 것은 운동의 성과가 선순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운동의 개인업적화·사유화이며, 운동의 독립성과 순수성(표방한 가치에 대한 진실성이란 의미에서)을 의심받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대한 경계와 비판을 담아, 인권운동은 제도권 권력을 얻는 과정으로 여겨져선 안 되며 충분한 거리를 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 구체적 내용은 겸직의 금지, 기간 제한, 경력 활용 제한이다. 첫째, 지음의 책임·상임 활동가는 정당 활동 및 공직 활동을 금지한다.(평당원, 하급 공무원은 개인의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해 제외) 둘째, 책임·상임 활동가였던 사람이 그만두고 고위 공무원 및 정당의 선출직·임명직·정무직을 맡는 혹은 그 반대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있어야 한다. 활동가가 정당·공직으로 직행하면, 직전에 하던 활동이 연루될 수 있고 독립성에도 해가 된다. 이런 행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개인의 자유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장치로 기간 제한을 둔 것이지, 1년이 지나면 고민 없이 해도 된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력 활용 제한으로, 책임·상임 활동가는 정당 및 공직에 진출할 목적으로 지음 활동을 이력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다만 조직의 결정이 있으면 허용되는데, 이는 조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활동가의 정당 및 공직 진출이 필요한 정세라고 봤을 때는 지지·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사실 정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원내정당과 그렇지 않은 경우, 제도권 권력이라 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성격이 있겠고, 공무원도 다양한 성격이 있겠지만(가령 녹색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다를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교육부 장관도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를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우선은 모든 정당 활동 및 공직 활동을 대상으로 했다. 그 이상의 구체적 판단은 조직에서 논의를 통해 함께 합의해 나갈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원칙

들어가며

청소년인권운동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공간 속에서 숨 쉬는 청소년이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의 전면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이며, 인간의 범주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역동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의 활동가는 그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자신이 하는 운동으로 받아들이며,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바라는 변화가 청소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동과 조직은 우리의 생활과 이 사회 속에 존재하며,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폭력과 억압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그 자체로 올바른 것도 아니며 우리의 조직이 그 자체로 대안적이거나 해방적인 것일 수도 없습니다. 활동가들이 마주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 불안정한 삶의 조건도 오래도록 이어져온 문제입니다. 출세를 위해 운동을 사유화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운동을 제도권 정치의 하위 부문으로 인식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도 우리의 운동을 힘겹게 만듭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청소년들의 열악한 정치·사회·경제적 위치, 청소년인권운동을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으로 평가절하하는 문제, 그러면서 안정적인 활동가로 자리 잡기 쉽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조건 위에서 함께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음을 지어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을 더욱 내실 있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의 삶을 꾸려가는 곳곳에 지음의 활동가들이 동의하고 이정표 삼을 수 있는 원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지음의 상·책임·채움 활동가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활동가 원칙> (가)을 통해, 활동가 개인과 단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서로 활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활동하는 원칙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공동의 목적의식을 가진 운동의 주체이자 상호 협력의 대상으로 지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이나 책임이 불합리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건강하게 활동해나가기 위해, 운동의 목적에 맞으면서도 현실적이고 균형감 있는 관점 및 태도를 공유해야 하며, 민주적 조직 문화 그리고 운동을 함께 책임지면서도 지속가능한 활동의 방식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1. 우리는 자발성에 기초하여 운동에 참여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 활동가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동시에, 운동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동의에 의거해 스스로와 서로를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 대한다.
2. 우리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동할 수 있다.

단체와 다른 활동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배려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의 활동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야 한다.

3. 우리는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동료들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배려해야 한다.

4. 우리는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단체 내 규칙의 한도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운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며, 운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경험이나 전문성, 역량 등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곧 개인 간의 권력이나 위계로 이어지고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쉽게 단정짓지 않으며 지음에서는 함께 활동의 역량을 만들어가고 협력할 책임을 공유한다.

6. 우리는 지음에서 임금노동자로서 계약을 맺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7. 활동가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할 시 최저임금과 적절한 휴식, 그리고 공공보험 등 단체의 자원 상황상 가능한 복지를 제공받는다. 단, 적절한 노동조건과 복지의 수준은 해당 활동가를 포함하여 지음의 활동가들이 함께 협의하여야 하며, 단체의 상황과 정보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우리는 활동가들의 처우와 활동 조건이 향상되도록, 운동의 자원을 확보해나가고 활동가들을 위한 상조·지원기관이나 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을 돕는 등 지속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반폭력·반차별

우리는 지음에서 서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 존엄을 존중하며 활동할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사회적 정체성과 위치의 차이가 있고, 소수자성에 따른 차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폭력적 상황이나 사건 등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되도록 방지하기 위해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과 사회적 소수자성에 따른 차별을 거부합니다. 나이주의와 나이 차별에 반대하며, 성별 이분법과 고정관념에 저항하고, 그 밖에 우리 사회 안의 여러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또한 폭력·차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함께 대처하여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확립, 피해의 회복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1. 우리는 운동의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우리는 단체 안에서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장애 여부, 인종, 출신지, 가족 형

태, 학력, 외모, 사회적 신분 등 사회적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다른 활동가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른 차별적, 위계적 언행 그리고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과업 수행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5. 우리는 다른 활동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위협·비하·굴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언동을 요구하고 그에 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우리는 다른 활동가에게 사회적 소수자성에 따른 차별·혐오 표현 및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활동가가 참여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7. 우리는 단체 안에서 폭력·차별 등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처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한다.

8. 우리는 본인과 다른 활동가가 운동의 과정에서 다른 단체의 활동가나 사람 등으로부터 폭력·차별 등을 겪었을 때 이에 대처하고 회복하기 위해 협력한다.

조직 문화 및 갈등 해소

우리는 각자가 가진 배경과 경험이 고유함을 인지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이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갈등 및 대립 상황을 외면하거나 서둘러 수습하기보다는 이를 마주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함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1. 대화와 토론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통하는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살피며 대화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다.

2. 안건 및 특정 상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지난 모임의 기록을 공유하는 등 새로운 구성원도 의견을 내는데 망설여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한다.

3. 잘 모를 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질문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4. 모두가 고루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역량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5. 다른 활동가와 갈등이 생길 때에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대의 비판을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6. 사회적 소수자라는 사실이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7. 우리는 늘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대화를 통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직 활동 제한

우리는 사회 운동과 정당정치, 사회 운동과 공직활동은 설령 비슷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독립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는 몇몇 개인이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힘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운동의 경험과 이력이 개인의 공직 진출을 위한 발판이나 경로처럼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나누며 함께 실천합니다.

1. 회칙 제42조에 따라 지음의 책임·상임활동가는 정당 활동 및 공직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단, 정당에 가입하여 평당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하급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갖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2. 지음의 책임·상임활동가였던 사람이 지음의 공식 의사 결정 없이 고위 공무원 및 정당의 선출직·임명직·정무직 등의 활동을 하려면 지음 활동을 그만두고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

3.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 및 정당의 선출직·임명직·정무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지음의 책임·상임활동가가 되려면 해당 활동을 그만둔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

4. 1년이 지난 후에도 책임·상임활동가였던 사람이 정당 및 공직에 진출할 목적으로 지음 활동을 이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단, 지음의 총회 또는 운영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5. 채용활동가도 위와 같은 약속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운동원칙선언>, 반복되는 합의의 역사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정부와 자본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더불어,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게 되는 명망과 물질에 대한 유혹에 침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단함도 감수해야 한다.”

- 인권운동사랑방 <운동원칙선언> 중

‘독립군 원칙’, 1998년 인권운동사랑방이 활동가 조직으로서 지향을 담아 발표했던 <운동원칙선언>의 별칭이다. A4용지 한 장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문서의 별칭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붙게 된 데에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가 활동비 받으며 운동한 게 아니지 않겠냐”는 말이 그 배경에 있다. 운동원칙 선언을 만들 당시는 모르겠지만, 현재시점에서 농담이라면 고리타분하고, 농담이 아니라면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운동원칙선언>은 지금까지도 사랑방의 중요한 선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운동원칙선언>의 지향

운동원칙선언은 그저 사랑방의 상임활동가를 규율하기 위한 윤리나 규칙은 아니었다. 활동가가 중심인 조직을 지향하며 출발한 인권운동사랑방은 회원이나 조합원이 아니라 활동가가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조직을 꿈꿨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활동가의 역량과 인권운동의 인프라를 강조하며 운동을 펼쳐나갔다.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활동가의 자세가 있었고 이를 명시한 것이 <운동원칙선언>이다.

활동가가 자유롭게 해나가고 싶은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정부로부터 독립성은 물론, 운동 단체의 주요한 후원자들인 법률가나 교수 등 전문가에 의존하는 운동의 경향도 경계했다. 회원-조합원, 운영위원 등에 의해 입장이 정해진 후 활동가는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부터 입장, 정책의 방향까지 전반에 걸쳐 활동가가 스스로 판단하고 만들어가는 조직을 지향한 것이다. 이는 조직의 재정적인 고민까지 회원 중심의 조직들과는 다르게 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활동가가 돈 벌 궁리하며 주변의 이야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활동가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키울 고민부터 하도록 조직의 문화와 규범을 세울 필요가 있던 것이다.

-원칙은 변화한다

‘어떤 고단함’도 기꺼이 감수하고, 경제적 유혹은 물론 명망에 의존하지 않는 활동가로서의 자세를 역설한 문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이기 위해서는 운영원리로 작동해야 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한 재정 사업은 모두 고민하지만, 활동가 생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기를 주문하고, 궁극적으로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활동가 조직을 지향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한 이유다. 그 결과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는 최소한의 활동비만 받고 각자 생계 활동을 이어가며, 동시에 누구나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상임활동가의 정원을 두지 않는 조직 운영원리를 도출했다. 운동원칙선언은 98년에 명문화시켰다뿐이지 창립부터 2006년 운동원칙의 수정이 있기 전까지 실제 10년 이상 조직의 운영원리로 작동해왔다.

그럼에도 1998년 운동원칙선언은 활동가에게 가혹한 원칙임은 분명했다.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생계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도 확보하기를 요청받는 활동가는 생활의 안정성도, 운동의 지속성도 확보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노동하고 활동가로서의 본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교육에 종사했다. 입시 기간에는 활동가들이 모두 학원에서 일하느라 단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개별 활동가들이 고단함을 충분히 감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운동원칙이 인권운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했다. 그 결과 2006년 운동원칙은 수정되었다. 활동가의 생계는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상임활동가의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명문화된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자체가 운동-조직의 지향을 앞설 수 없음을 확인한 과정이었다.

-불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조율하는

개인적으로 2006년 <운동원칙선언>의 수정은 조직이 움직여온 방향만 살펴보면 원칙의 수정이 아니라, 폐기 후 다시 쓴 원칙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활동가의 독립성 유지를 ‘활동가다움’의 핵심으로 조직 구성 원리부터 운영 방안까지 모두 담아냈던 98년 원칙의 시기와 대비하면 2006년 이후의 사랑방의 조직 운영 방안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운동원칙선언이 폐기가 아니라 수정인 이유는 운동원칙의 핵심이 규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시도이자 실험임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성 유지에만 방점이 찍혀 있던 기존 원칙의 지향을 (수정할 당시 활동가들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새롭게 제기된 활동가의 생계-재생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함께 답하기 위한 토론과 시도가 2006년의 수정이었다. 옳기 때문에 원칙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합의를 원칙으로 담아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의 사회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동원칙에 주석을 만드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안정된 활동가의 생계를 위해 사

회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최저임금도 미치지 않는 활동비 조건에서 4대보험 가입의 가능성은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해왔다. 하지만 활동가의 노동권-재생산에 관한 논의 등이 논의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내부 성원의 사회보험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운동원칙까지 검토를 시작했다.¹⁾ 기존 운동원칙의 지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 사랑방의 활동가들은 운동원칙의 주요 키워드인 생계, 활동가,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토론하며 원칙에 주석을 달고, 4대 보험 가입의 길을 열었다. 사회보험가입을 둘러싸고 원칙까지 검토하는 피로감도 분명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방에서 활동의 원칙을 세우는 일은 정답을 찾는 일이 기보다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현재 활동가들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만드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합의 가능한 원칙을 세우는 일

지음의 토론회 참여 제안을 받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활동가다움에 대해 ‘내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였다. 부끄럽지만 나는 하고 싶은 운동의 의제나 내용이 있어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저 멋지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럴 때 사랑방의 운동원칙은 그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기꺼이 고단함을 감수하며, 앞으로의 동료를 위해 조직을 개방하며 운동을 생활의 중심으로 두는 그런 멋짐 말이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나는 그 멋짐에 속하는 활동가이기보다는 부족함에 속하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멋짐의 무게가 앞으로 내가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심을 버리지 못한 내가 활동가다움에 대해서 말을 엮는 게 적절한가 싶은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토론회에 함께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여전히 내가 활동가이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같이 활동가다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조직의 원칙을 어떤 위치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사랑방에서 운동원칙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성원 간의 합의를 확인하고 만드는 자리라 하더라도, 이 논의는 여전히 미루고 싶어지거나, 논의 전에 크게 심호흡부터 하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다. 신입활동가가 사랑방에 ‘입방’할 때마다 운동원칙이 이렇게 조직 안에서 중요하게 통용되고 있었다면 미리 말해야 했지 않냐는 제기를 받기도 일쑤다. 약속이나 합의라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확인하고자 할 때 말은 무거워지고, 이해의 편차는 더욱 커진다. 나쁘게만 이야기하면 원칙을 세우면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혹’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스로 혹을 붙이는 일인지 알면서

1) 당시 사랑방 논의의 핵심은 ‘활동가는 분명 노동을 하지만 근로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노동만으로 우리의 활동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만으로 우리의 노동을 ‘해명’해야 할 때 우리는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일까?’를 둘러싸고 사랑방 활동가들의 해석과 설명을 합의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로서 운동원칙선언 주석은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 <https://www.sarangbang.or.kr/content/운동원칙선언>

도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그만큼의 의지를 다지고 확인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의지의 방향을 멋진 원칙을 남기는 것보다 멋진 합의를 만들어내는 관계를 위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고 싶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분명 누군가 할 것이기에 '함께 하고 싶은 원칙', '기꺼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로 이 토론을 마무리한다.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진 시대, 활동가란 무엇인가

진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논의의 전제

- 전교조의 특수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산별노조로서 교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교사들의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단체 이름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사들만을 부르는 말이 아니니까요. 전교조 창립 초기에는 교사들만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학교에서 노동하는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조합을 세우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군, 직렬이 함께 섞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당시 노동조합법 상 불가능했고 결국 이름과 달리 교사들만의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교원과 교사는 그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교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전교조에는 교장, 교감, 교사였다가 전직('직'을 바꿈)한 장학사 등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교원이 아닌, 교사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교육제도 전반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교사가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한 노동조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게 합니다.

첫째, 자격과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과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 실천에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또는 방어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조합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중요한 목적으로 가집니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단체, 특히 인권단체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이나 해고 등에 저항해서 투쟁하며 사회적 의미로 싸움이 확장되어 가는 것과 달리 인권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의미를 중심에 두고 운동을 확장해 나가니까요.

셋째, 직장생활의 영위를 전제로 또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모든 삶의 순간 순간들은 운동적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종종 일상과 운동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직장을, 그리고 동종직업군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 거기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리고 조합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섞여 밀접하고 일상적으로 관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직장생활과 나누어져 생각되는 빈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활동가다움’과 ‘운동조직다움’에 대한 한계 또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상과 운동을 병행하는, 모두의 운동을 상상하는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저의 개인적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활동가다움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활동가다움은 **#욕심**입니다.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욕망, 다른 이를 착취하며 살지 않겠다는 욕망, 착취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욕망. 이런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치고 치덕치덕대는 집착과 욕심이 활동가다움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활동가들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활동 참여를 권합니다. 하지만 결국 활동가가 되는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원함으로서 성장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한번만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은 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해방인지, 함께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운동하는 삶이 어떤 실현함을 주는지 느끼고 욕망하게 하는 조직 그런 운동이 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활동가들이 다른 활동가를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활동가 원칙이나 평등수칙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기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더 나아가 우리의 운동을 매력적이고 더 욕망으로 들끓을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을 위한 서로의 욕망을 마구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칙과 약속들 말입니다.

두 번째 활동가다움은 자신의 욕망을 정돈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활동가는 앞서 말했듯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지금의 사회 질서가 문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의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질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질서에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기꺼이 포기하고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 손해가 없는 선택은 가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운동은 삶의 방향성이고, 삶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많은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불이익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한 후회나 선택을 돌이키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겠죠. 하지만 갈등의 순간마다 또다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 삶의 방향이고 그래서 거듭 강조하듯, 운동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멤버십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가들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합니다. 그 삶 자체가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현재 그러한 삶으로서의 운동을 지향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

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 제도에 사회운동 역시 상당 부분 편입되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편승하는 것일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금을 받는 사회단체를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사회운동 역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영역인 만큼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돈도 받고 직함도 받고 정부에 고용되어 일하면 우리는 어떻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요? 돈도 받고 직함도 받았으니 의무도 주어집니다. 그 안에서 나의 욕망은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요? 사회질서로부터 저항하는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참고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령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1.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교원단체와 연대한다.

* 참교육실천 강령

우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참교육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돕는다.
1. 우리는 동료 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평등하고 안전한 회의/연수/행사를 위한 우리의 약속

1. 우리는 성별, 나이, 가족 형태, 혼인 여부, 임신·출산,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연애 여부, 연애 형태, 신체조건, 장애, 병력, 출신과 거주 지역, 학력,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구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1. 나이, 경력, 성별, 역할, 직책, 직급, 친밀도 등에 따른 자신의 권력을 인지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1. 모든 이에게 평등한 발언권이 보장되었는지 살피고 개선한다.

1. 나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배려한다.

1. 내가 느낀 불편함에 주목하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 듣고 성찰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1. 신체 접촉, 성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허용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여러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성평등 문화를 가로막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관계

-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서로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나이와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 간의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모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정하고, 상호 존중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양성 존중

- 국적, 인종, 나이, 출신지, 학력, 종교, 질병 여부, 성별, 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 혼인 여부, 장애 여부,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 상대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내게는 당연해도, 상대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활동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 장애유형이나 언어, 육아·돌봄, 식이제한 등의 조건으로 인해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 내가 느낀 불편함에 주목하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 듣고 성찰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로막는 행위(언행)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평등이 나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

- 성 역할에 근거한 업무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 술은 강요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며, 뒷장리는 함께 합니다.
- 성적 농담, 사생활에 대한 질문, 호기심을 담은 질문, 경력을 앞세운 권위주의적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행사 시 발언자의 성별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행사 시 사회자, 발언자는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행사 시 수어/자막/음자통역/공간 등을 검토하여 배제되는 참여자가 없도록 노력합니다.